

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·운용을 위한 실천사항

I. 목적

이 실천사항은 아이에스동서(주)(이하, '당사'이라 함)가 일정규모 이상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스스로 사전에 심의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,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」에서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(이하 "하도급법"이라 함)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II.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·운용 실천사항

1. 기본원칙

이 실천사항은 당사가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위해 설치·운용하는 내부 심의위원회의 자율성, 적절성 및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의 일반적 사항만을 제시한 것이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원사업자가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별·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.

2.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·운용 실천사항

가. 내부 심의위원회 구성의 적절성

- (1) 내부 심의위원회는 하도급관련업무 담당임원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임직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사외이사 등 외부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.
- (2)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.

나. 내부 심의위원회 운용의 실효성

- (1) 내부 심의위원회를 월 1회 이상 또는 현안 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- (2) 내부 심의위원회는 안전보건본부 담당임원을 위원장으로 한다.
- (3) 심의위원회는 안전보건본부장, 건축본부장, 토목본부장 으로 구성한다.
- (4) 심의는 전체 위원 2/3이상 참석시 개최하며, 의사결정은 참석인원의 2/3 이상 찬성시 가결한다.
- (5) 해당 위원이 불참할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임직원이 대리참석 할 수 있으며, 대리 참석한 임직원은 의결권을 가진다.
- (6) 위원장은 위원회 운용규정의 시행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의결을 통해 정할 수 있다.
- (7) 내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조치사항 등과 관련한 문서는 심의 종료일로 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.

3.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심의 사항

가. 100억원 이상의 하도급 계약금액의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 과정의 적정성 및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적법성 여부(저가심의 포함)

- (1) 서면계약서 교부의무 준수 여부
- (2)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의무 준수 여부
- (3)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위반여부
- (4) 물품 등의 구매강제금지 위반여부
- (5)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위반여부

나. 50억 이상의 하도급 계약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심의하여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발생여부 점검 및 시정 등 적법성 사후 검증

- (1) 지급기한 내 대금지급 여부
- (2) 하자 보수 책임의 부당전가 여부
- (3) 기술 유용행위 발생 여부 등

다. 협력업체 등록, 취소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심의

- (1) 협력업체 등록, 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
- (2) 협력업체 미선정(신규) 또는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 신청 건 등
(필요시 관련 협력업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함)

라. 협력업체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관련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심의

- (1) 동반성장협약 대상 협력업체 선정의 적절성
- (2) 전 분기 동반성장 이행실적
- (3) 동반성장 프로그램 추가, 삭제 및 적절성 등

마. 협력업체 포상 및 제재대상 상별 수위

바. 심의 안건이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시정하여야 하며, 관련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취한다.

사. 당사 및 협력업체의 계약불이행에 대한 형평성 있는 페널티 심의,
의결